제433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규정 법률로 상향 규정>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45호)

2026.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 8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14.

3. 회 부 일 : 2025. 3. 1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9제5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실태점검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8조의9제7항 제3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실태점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고, 실태점검을 거부·회피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구 분	개 정 안	
실태점검 (§8의9⑤, 신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해 **실태 점검**	
	정기 점검	**연 1회**
	수시 점검	중앙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필요 인정시**
실태점검시 자료제출요구 (§8의9⑥, 신설)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실태점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등록취소 (§8의9⑦)	현행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요건**에서 다음 요건 신설	
	<신 설>	**실태점검 거부·회피**하거나 **자료제출요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61⑥)	현행 과태료 **300만원 부과 행위**에 다음 행위 신설	
	<신 설>	**실태점검 거부·회피**하거나 **자료제출요구 응하지 아니한 자, 허위자료 제출한 자**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면서(법 제8조의9제1항),[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동조 제5항전단),[2] 등록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6항).[3]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

구분(§8의9⑤)	등록취소사유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2호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호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1)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4)]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실태점검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규정하고, 실태점검을 거부·회피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개정안의 등록요건 》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공직선거관리규칙(§2의2③)</th><th>개정안(§8의9①)</th></tr>
<tr><td rowspan="3">실태점검</td><td colspan="2">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 <u>실태 점검</u></td><td rowspan="3">공직선거관리규칙과 동일</td></tr>
<tr><td>정기 점검</td><td><u>연 1회</u></td></tr>
<tr><td>수시 점검</td><td>중앙 또는 관할선거여론 조사심의위 <u>필요 인정시</u></td></tr>
<tr><td>자료제출 요구</td><td colspan="2"><u><신 설></u></td><td>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u>실태점검시</u> 필요 인정시 <u>자료제출 요구 가능</u></td></tr>
<tr><td rowspan="2">등록취소</td><td colspan="2" rowspan="2"><u><신 설></u></td><td>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요건에 다음 요건 신설</td></tr>
<tr><td><u>실태점검 거부·회피</u>하거나 <u>자료제출요구 응하지 아니한 경우</u></td></tr>
<tr><td rowspan="2">과태료</td><td colspan="2" rowspan="2"><u><신 설></u></td><td>현행 과태료 300만원 부과 행위에 다음 행위 신설</td></tr>
<tr><td><u>실태점검 거부·회피</u>하거나 <u>자료제출요구 거부, 허위자료 제출자</u></td></tr>
</table>

4)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1. 정기 점검 : 연 1회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점검은 해당 점검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는 등[5] 조사기관의 권리·의무와 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음.

또한, 실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비협조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등록취소, 과태료)을 통해 실태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경우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개정·보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소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여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6]

---

5)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6) 헌재 2016.7.28.2014헌바158등, 헌재 2018.12.27.2017헌바231, 헌재 2019.11.28.2017헌가23 참조

따라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의 성격 및 중요성,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필요성,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탄력적 규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실태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실태점검 후속조치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인력·예산에 관한 논의도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참고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1. 정기 점검 : 연 1회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 설>	⑥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	⑦ 선거여론조사기관----------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회피하거나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방법과 자료의 범위, 그 밖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④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신 설>	1. 제8조의9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회피하거나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